

무배당
푸르덴셜
경영인정기보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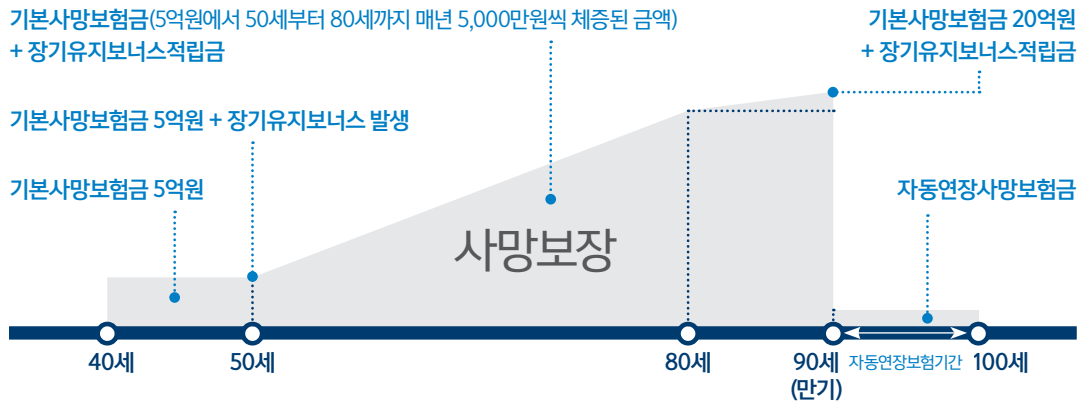
상품안내

가입예시

보험료(10% 체증형)

(남자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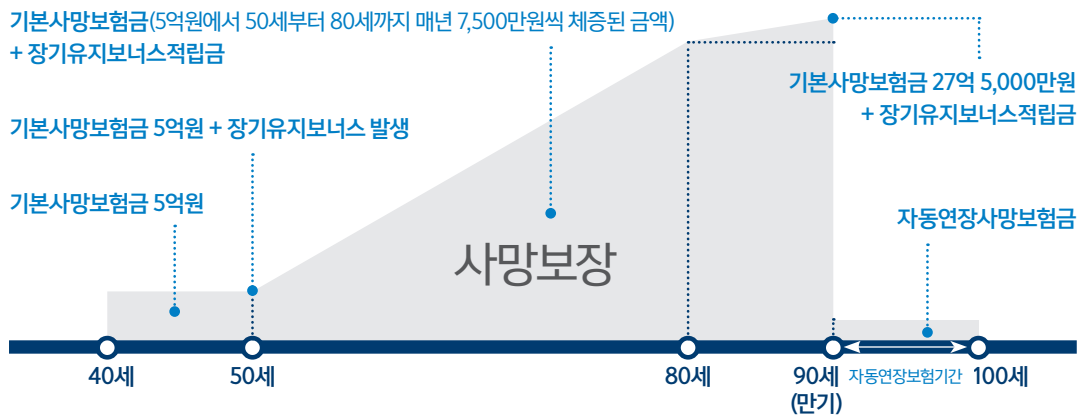
1,985,000원



보험료(15% 체증형)

(남자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2,680,000원



※ 위 도해에 예시된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자동연장사망보험금 등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가입안내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소 3억원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기본보험기간

기본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종류	가입나이
20년만기	20년납	10%체증형	20세 ~ 70세
		15%체증형	20세 ~ 70세
80세만기	20년납, 전기납	10%체증형	20세 ~ 60세
		15%체증형	20세 ~ 60세
90세만기	20년납, 전기납	10%체증형	20세 ~ 70세
		15%체증형	20세 ~ 70세

- 자동연장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 만기 계약해당일부터 10년 이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보험금 지급기준
 - 기본보험기간

지급사유	보험금액	
	10% 체증형	15% 체증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입시부터 체증시작시점 이전까지 : 보험가입금액	
	체증시작시점(10년 경과) 이후: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된 금액 (단, 최대 체증기간 30년)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체증시작시점(10년 경과) 이후: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체증된 금액 (단, 최대 체증기간 30년)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 ※ 단,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지급 기준표에서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

지급사유	보험금액
피보험자가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자동연장보험가입금액의 100%

- ※ 자동연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 만기 계약해당일부터 10년 이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기간을 말하며, 자동연장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계약자적립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산출합니다.
- ※ 기본보험기간 만기시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보험기간은 없습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만기, 전가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10% 체증형	1,535,000	1,985,000	2,405,000	1,110,000	1,460,000	1,800,000
15% 체증형	2,085,000	2,680,000	3,170,000	1,510,000	1,980,000	2,400,000

-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 15% 체증형,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만기, 전가납, 자동연장보험기간 10년,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2,160,000	-	0.0%
3년	96,480,000	58,045,000	60.2%
5년	160,800,000	127,660,000	79.4%
10년	321,600,000	316,467,797	98.4%
20년	643,200,000	678,086,813	105.4%
30년	964,800,000	1,070,216,427	110.9%
40년	1,286,400,000	1,264,505,750	98.3%
50년	1,608,000,000	50,999,667	3.2%
60년	1,608,000,000	-	0.0%

- ※ 이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만기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의 해지환급금 등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직전 월계약해당일	12 × 10년 × 주계약 보험료 × 6.5%

-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 해당월의 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보험료 납입일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합니다.
- ※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산출합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를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에 가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적립합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만기시점까지 2.25%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적립됩니다.
- ※ 계약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4.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청약철회 청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푸르덴셜 간편한
경영인정기보험

1. 상품안내

과거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래 세가지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필요조건이란 의사가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예 아니오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예 아니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예 아니오

① 간편심사보험의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표 예시

(기준 : 15%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만기, 전기납, 단위 : 원)

구분	무배당 푸르덴셜 간편한 경영인정기보험		무배당 푸르덴셜 경영인정기보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입나이	30세 - 70세		20세 - 70세	
30세	2,430,000	1,840,000	2,085,000	1,510,000
40세	3,065,000	2,370,000	2,680,000	1,980,000
50세	3,545,000	2,805,000	3,170,000	2,400,000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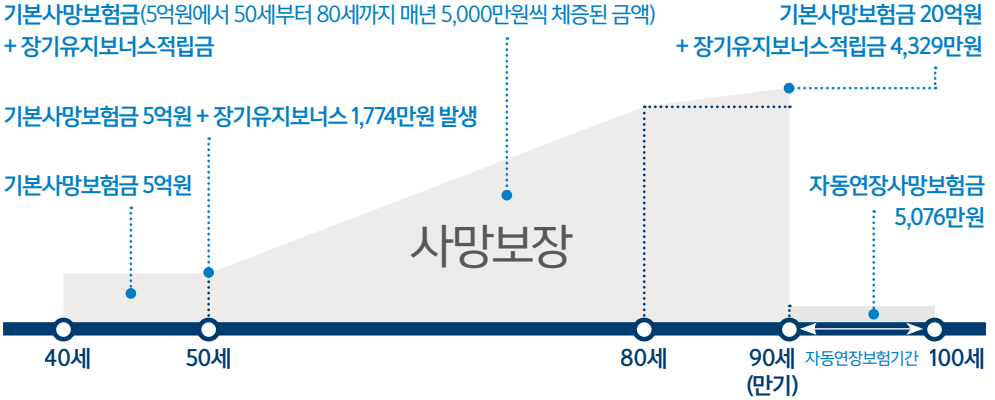
- 이 상품은 간편심사보험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인 '무배당 푸르덴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예시

보험료(10% 체증형)

남자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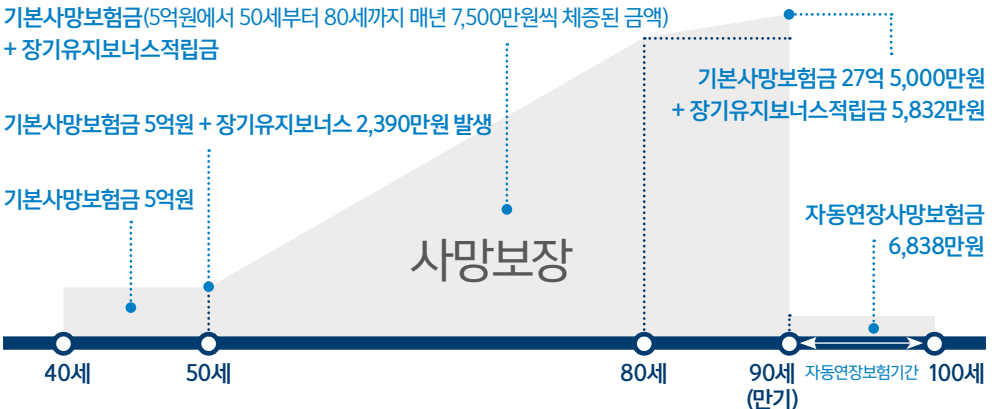
2,275,000원



보험료(15% 체증형)

남자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3,065,000원



※ 위 도해에 예시된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자동연장사망보험금 등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 중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③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소 3억원 이상 최대 10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기본보험기간

기본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종류	가입나이
20년만기	20년납	10% 체증형	30세 ~ 70세
		15% 체증형	30세 ~ 70세
80세만기	20년납, 전기납	10% 체증형	30세 ~ 60세
		15% 체증형	30세 ~ 60세
90세만기	20년납	10% 체증형	30세 ~ 70세
	전기납	10% 체증형	30세 ~ 70세
		15% 체증형	30세 ~ 70세

- 자동연장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 만기 계약해당일부터 10년 이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금 지급기준

- 기본보험기간

지급사유	보험금액	
	10% 체증형	15% 체증형
	가입시부터 체증시작시점 이전까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체증시작시점(10년 경과) 이후: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된 금액 (단, 최대 체증기간 30년)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체증시작시점(10년 경과) 이후: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체증된 금액 (단, 최대 체증기간 30년)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 ※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 중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단,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지급 기준표에서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

지급사유	보험금액
피보험자가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자동연장보험가입금액의 100%

- ※ 자동연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 만기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 이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기간을 말하며, 자동연장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계약자적립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산출합니다.
- ※ 기본보험기간 만기시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보험기간은 없습니다.

④ 보험료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만기, 전기납, 단위 : 원)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10% 체증형	1,785,000	2,275,000	2,705,000	1,355,000	1,750,000	2,115,000
15% 체증형	2,430,000	3,065,000	3,545,000	1,840,000	2,370,000	2,805,000

-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15% 체증형,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5억원, 90세만기, 전기납, 자동연장보험기간 10년,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780,000	-	0.0%
3년	110,340,000	68,885,000	62.4%
5년	183,900,000	147,425,000	80.2%
10년	367,800,000	362,541,370	98.6%
20년	735,600,000	776,600,133	105.6%
30년	1,103,400,000	1,217,806,333	110.4%
40년	1,471,200,000	1,446,230,643	98.3%
50년	1,839,000,000	58,326,112	3.2%
60년	1,839,000,000	-	0.0%

※ 이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만기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해지환급금 등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⑥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직전 월계약해당일	$12 \times 10\text{년} \times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6.5\%$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 해당월의 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보험료 납입일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산출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를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에 가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적립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만기시점까지 2.25%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적립됩니다.

※ 계약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4.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청약철회 청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